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환경일반법」의 주요 내용

1. 개요

국가면적이 약 2,780,400km^{2}에 달하는 아르헨티나공화국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 남미 대륙에서는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면적이 넓은 국가이다. 안데스 산맥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산맥, 평원지대, 호수 등으로 덮여 있는 아르헨티나에서도 환경오염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아르헨티나 환경법제의 기본이 되는 「환경일반법」은 어떠한 규정을 담고 있는지 본 보고서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2. 아르헨티나 「환경일반법」의 주요 내용

아르헨티나의 「환경일반법 제25675호」는 2002년 11월 6일에 최초로 제정된 후 최근 2014년 3월에 일부 개정되었다.

이 법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관리,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호 및 보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제1조).

이 법의 제2조는 국가환경정책(politica ambiental nacional)이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해 나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간활동을 통한 천연자원 및 문화자원 등 환경자원의 보호, 보전, 회복, 개선을 위한 노력;
2) 현존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3) 환경관련 정책의 결정 및 수립 시 국민참여 확대;
4) 합리적이고 지속가능적인 천연자원의 이용;
5)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
6) 생물학적 다양성 유지를 보장;
7) 인간의 행위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또는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경제・사회발전을 지향;
8) 환경교육을 통해 국민의 가치관 및 사회적 태도 변화를 촉진(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9)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개방;
10) 환경에 대한 위험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 등.

한편 이 법은 아르헨티나 영토의 전체 지역에 걸쳐 적용된다(지역적 적용범위, 제3조).

3. 환경정책의 기본원칙

이 환경일반법을 적용하거나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4조에서 명시하는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기본원칙은 환경정책을 집행할 때에도 적용된다.

1) 적합성원칙: 환경관련 자치법규는 환경일반법에 명시된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일반법이 우선시 적용됨.

2) 환경오염방지원칙: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원인 등에 대하여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대처하여야 함.

3) 사전예방원칙: 확실한 정보나 과학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환경파괴 또는 오염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함.

4) 세대 간 공평성원칙: 환경보호책임자는 다음세대도 환경을 이용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5) 점진의 원칙: 환경관련 정부의 목표는 내부적인 목표와 최종목표를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달성해야 함.

6) 원인자책임의 원칙: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환경오염의 방지, 제거 및 손해전보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함.

7) 보충성의 원칙: 국민 개인이 환경보호 및 보전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 국가는 각 행정기관을 통해 개인과 협력하거나 필요시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여야 함.

8)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경제적·사회적 개발을 함에 있어서 환경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여야 함.

9) 연대의 원칙: 국가와 각 연방정부는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에 있어 연대적 책임을 짐.

10) 협동의 원칙: 환경보전을 위해 국가, 연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 전체가 협동하여야 함.

4. 환경정책도구

세계법제정보센터

아르헨티나 환경일반법이 정하는 국가환경정책의 도구는 다음과 같다(제8조).

1) 환경법제;

2) 환경영향평가;

3) 인간의 활동을 통제·감독하는 시스템;

4) 환경교육;

5) 환경을 분석하고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6)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을 위한 경제제도.

환경일반법에 따르면 환경교육은 이러한 환경정책의 기본적인 도구로써 천연자원의 보전, 지속가능한 천연자원의 이용 및 삶의 질 개선 등을 목표로 국민에게서 이러한 가치와 태도를 개발하고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14조). 또한 환경일반법에 따르면 환경교육은 지속적·영구적인 교육프로그램이며, 변화하는 사회흐름에 맞춰 현대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당국과 교육당국은 협력하여 이 환경교육계획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제15조).

한편 환경정보에 관한 규정(제16조~제18조)을 살펴보면 자연인이나 법인, 공공 또는 민간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아르헨티나 환경당국이 관리하는 환경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는데(제16조), 이를 위해서 환경당국은 연방환경위원회(COFEMA)를 통하여 환경정보를 관리·유지한다(제17조). 제18조에서는 환경당국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는데 환경에 관한 정보와 인간의 행위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바로 그것이다.

5. 연방환경제도(Sistema Federal Ambiental)

제23조~제24조는 아르헨티나 연방환경제도에 관하여 간단히 명시하고 있다. 이 일반법을 통해 마련된 연방환경제도는 아르헨티나의 환경정책을 기획·조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연방)정부 및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부 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되는데 이러한 환경정책이나 계획은 연방환경위원회(COFEMA)를 통해 실현된다.

행정부는 환경과 관련된 기본적인 규정이나 권고사안, 결의안 등을 제출할 것을 연방환경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aws Information Center

6. 환경피해

아르헨티나 환경일반법에서는 환경피해를 환경, 자원, 생태계 균형 등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정의한다(제27조). 이 법에 따라 환경피해를 유발시키는 자는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복구시켜야 할 책임을 가진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그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법부가 정하는 피해보상금액(벌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이 금액은 환경일반법을 통해 설립된

환경보상기금(Fondo de Compensacion Ambiental)에 예치하게 된다(제28조).

일반적으로는 오염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만 오염자가 환경피해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제3자의 잘못,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오염자의 책임이 면제된다(제29조).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환경피해가 집단에게 발생한 경우에는 「헌법」 제43조에 기초하여 피해자 본인을 비롯하여 옴부즈만(Defensor del Pueblo) 및 환경관련 비정부단체(NGO)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도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집단피해에 대한 소송을 일부 피해자들이 제기하게 되면 나머지 피해자당사자들은 소송에 제3자로 참여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피해사실에 대해 추가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제30조).

환경피해에 따른 소송은 일반 재판관할권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재판부가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고 제32조는 규정한다(환경일반법에서 환경관련 특별재판부에 대한 언급은 없음).

7. 환경보상기금

환경일반법 제34조는 앞서 언급된 바 있는 환경보상기금(Fondo de Compensacion Ambiental)에 대해 규정한다.

환경보상기금이 설립되는 목적은 환경의 기본적인 질을 보장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나 위험요소를 예방·방지하며,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보전하기 위해서이다.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aws Information Center

<자료출처: 아르헨티나 국가법령자료실 http://www.infoleg.gov.ar/ 또는 세계법제정보센터 아르헨티나 「환경일반법」 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AR/priority/28455>

작성자: 법령정보관리원 문현진 전문연구원